

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 (제5조제4항 관련)

용기등의 종류	용기등 수리자의 구분	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
1. 용기	가.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	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이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
	나. 법 제5조에 따라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	
	다.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	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인력 중 기술인력의 자격을 가진 자
	라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
	마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(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)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	<p>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8조에 따라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마다 실시되는 전문교육을 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시공관리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로 한정한다) 2) 시공자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)와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
2. 냉동기	가.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	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이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
	나. 법 제5조에 따라 냉동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	

3. 특정설비	가.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	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이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
	나. 법 제5조에 따라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	
	다.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	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인력 중 기술인력의 자격을 가진 자